

#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에 관한 규정

제정	1995. 4. 3.	제134호
개정	2002. 7. 6.	제385호
	2010. 3. 5.	제513호
	2012. 3.28.	제596호
	2020.11.23.	제828호
	2024. 2.22.	제903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임용규정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, 재계약임용 및 승진임용되는 전임교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임용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심사자료)**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1. 재임용 심사평정표 (별지 서식)
2. 임용기간 내의 논문 등 연구실적물
3.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

**제3조(심사기준)** 재임용심사는 당해 교원에 대하여 임용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며, 평정항목별 평정기준은 별지 서식과 같이 한다.

1. 교육
2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창작활동과 학술활동
3. 가. 학생생활 지도능력과 실적  
나.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도능력과 실적
4.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내·외 봉사활동
5. 본교와 관련된 산학협력 실적 <신설 2024.2.22.>

**제4조(재임용 심사평정표)** ① 재임용심사평정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심사자료에 의한 객관적 근거에 따라 교무처장이 별지 서식을 작성하고 총장이 최종 확인한다. <개정 2020.11.23.>

② 전임교원의 재임용평정은 교수재임용 심사평정기준에 의하며 C 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뒷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연구실적심사)** 재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심사는 「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임용 규정」 별표 1의 교원연구실적심사기준에 의한다.

**제6조(평정표 제출 및 심의)** 교무처장은 재임용심사평정표와 연구실적 등 심사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하고, 총장은 이를 대학인사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. <개정 2024.2.22.>

**제7조(기간제 임용의 기준)** 심사평정상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점을 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70점 이하인 자는 재임용에서 제외한다.

**제8조(부적격자 소명절차)** ① 피평정자는 평정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5일 안에 총장에게 제출하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피평정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.

③ 제2항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은 특별심의회를 구성하여 재심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.

**제8조의2(특별심의회 구성)** 특별심의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각 학부(과)장과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.

**제9조(기타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**부 칙(제134호, 1995. 4. 3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(제148호, 1995. 6. 14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(제198호, 1996. 8. 14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1996. 9.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1996학년도 제2학기 교수신규채용, 1996.9.1자 재임용, 1996. 10. 1자 승진 임용 예정자의 연구실적물은 현행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을 적용한다.

### **부 칙(제287호, 1999. 7. 15.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(제385호, 2002. 7. 1.)**

이 규정은 2002. 7. 1.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(제513호, 2010. 3. 5.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(제596호, 2012. 3. 28.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(제828호, 2020. 11. 23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**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교학처장”을 “교무처장”으로 한다.

### **부 칙(제903호, 2024. 2. 22.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재임용 심사 평정표

평정 대상자	직위 : 직급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명 :	확인자			평정자	배점			비고
		(인)				(인)			
영역	구분 평점항목	배점			실적 및 의견	배점			비고
		A	B	C		A	B	C	
1. 교육	① 수업 이행실태 및 근무 상황	15	13	10					
2. 연구 및 창작 활동	① 연구실적물의 양	25	20	15					
	② 연구실적물의 질	10	8					*	
	③ 창작활동 및 연구와 관련된 활동	5	3	2					*
	④ 학회활동(체육관련단체 활동, 산학협력 활동 포함)	5	3					*	*
3. 학생 지도 활동	① 학생생활 지도실적 (이론분야)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도능력과 실적 (전문실기분야, 연구중점분야) 산학협력 이행을 위한 능력과 실적 (산학협력중점분야)	10	8	5					
	②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	5	3	2					
4. 기타 사항	① 학위소지	5	3	2					
	② 교원으로서의 품위	5	3					*	*
	③ 학내 인화 관계	5	3					*	*
	④ 대학발전을 위한 기여 및 봉사	5	3					*	*
	⑤ 상 별	5							

※ "C"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뒷면에 구체적인 사유 명시